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4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 한정애・이수진・송옥주

주철현 • 이병진 • 조인철

조정식 • 박희승 • 김영배

임오경 · 허종식 · 김주영

정성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 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그 주주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근로자"를 "갖춘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u>등</u>) ①
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u>근로자는</u> 다음	<u>사람은</u>
각 호와 같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	1
속 근로자	근로자 및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아
	<u>닌 주주 및 그 주주의 직계</u>
	존비속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	2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	
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	
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	
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	

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근로자 가. ~ 다. (생 략)

-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 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 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 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 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 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으로 선임된 사람
- 2. ~ 4. (생 략)
- ③ (생략)
-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④ 근로자등의---

- <u>갖춘</u> 근로자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u> </u>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u><단서 삭제></u>

<삭 제>

- 2.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 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 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 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 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